

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I. 개황

- 영국은 방송프로그램과 주문형프로그램(On Demand Programme)의 내용 기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공적규제¹⁾를 적용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규제²⁾로 대처하며, 청소년유해정보는 협력규제³⁾로 대응하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운영

□ 방송프로그램 및 주문형프로그램의 내용 규제

- 문화미디어체육부(DMCS) 소관의 공적 규제기구인 OFCOM이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을 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
- 주문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OFCOM이 'ODPS 규칙'을 근거로 일정 부분 선형 TV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 아동음란영상물과 같이 생산·소지·유포 등이 불법⁴⁾인 정보에서부터 명예 훼손 내용 및 인종차별 표현 등⁵⁾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 유통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사법처리 위주로 규제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제한

- 정부가 청소년유해정보의 등급 분류 및 표시의 의무와 필터링 방법을 활용한 기술적 차단 방식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설정
- 정부, 민간 공익단체⁶⁾, 이용자 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유해정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에 집중

1) 법령에 근거한 공적인 독립기구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규제를 지칭
2)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 기관이 직접 행사하는 규제를 지칭
3) 내용규제 관련 법령과 자율규정 등에 근거한 이용자 또는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 단체 등의 자율규제와 민원처리와 사법처리 중심의 사법규제를 결합한 규제를 지칭
4) 아동청소년 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위반
5)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의 제3장 제1조(인종혐오 금지), 제3A장 제29B조 및 제29J조(종교 혐오 금지) 위반
6) IWF(Internet Watch Foundation)와 SWGL(South West Grid for Learning) 등

□ 온라인 불법유해물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추진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 정부 정책 - 자율규제’의 협력 시스템을 운용해오다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불법유해물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추진
 - ➡ 2018년 11월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018/1808, AVMSD 2018)의 개정을 통해 회원국의 동영상공유플랫폼(video-sharing platform, VSP)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물 유통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공적 규제 도입 결정
 - ➡ 의회의 소관 상임위 검토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의 대응 촉구 :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Online Harms 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촉구
 - ➡ 정부(DGMS & Home Office)의 1차적인 대응으로 2019년 4월 Online Harms White Paper(정부 방안) 발표 : 온라인 불법유해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독립규제기관 설립(Ofcom 담당 가능) 방안 등을 검토 중(입법 절차 과정 필요)

7)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DCMS) Committee가 2019년 2월 19일 발간

II. 규제 대상 및 근거

- 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대상과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기준, 주문형프로그램의 내용 기준,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온라인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제한으로 구분

□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규제 대상 및 근거

▶ 규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BC를 포함한 PSB(Public Service Broadcasters) 방송 프로그램 • 기타 상업방송(OFCOM 면허TV 방송) 프로그램 • BBC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On Demand Programme Service, ODPS, 커뮤니케이션법 제368A조 정의⁸⁾) 프로그램
▶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 • 유해성 및 위험성 • 혐오 및 학대 등의 범죄행위 • 종교 관련 기준 • 적절한 균형성과 정확성 •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방송 기준 • 공정성 • 사생활 보호 • 협찬 및 간접광고 등
▶ 규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1996) • 커뮤니케이션법(2003) • EU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 Directive) 등에 근거 • OFCOM이 제정한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

□ 주문형프로그램의 내용 규제 대상 및 근거

▶ 규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COM에 등록된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BBC 제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 유발 내용 금지 • 아동청소년 유해물 제한 •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 내용등급 분류 기준에 따른 등급 표시 의무 및 등급별 접근 제한 조치 시행 여부
▶ 규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 Directive) 및 커뮤니케이션법(2003) 제4A장 등에 근거하여 OFCOM이 제정한 ODPS 규칙

8) 해당 조항에서는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를 '영국 국적의 편집 책임자가 제작한 TV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일반 수용자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

□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 및 근거

▶ 규제 대상	•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불법 방송통신 콘텐츠
▶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소지 및 유포 금지 • 불법촬영물 및 리벤지포르노 정보의 유포 금지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 금지 • 기타 불법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 등
▶ 규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Criminal Justice Act 2003) • 공중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 음란물출판법(Obscene Publication 1964) • 아동청소년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 Act 2003) •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 • 형사사법재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3) 등

□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제한 대상 및 근거

▶ 규제 대상	•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청소년유해 방송통신 콘텐츠	
▶ 규제 내용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 등급 표시 및 방송 시간대 준수 의무
	기타 콘텐츠	청소년유해물 접근 제한 장치의 제공 의무
▶ 규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1996) • 커뮤니케이션법(2003) • EU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 Directive) • Digital Economy Act(2017) • Video Recording Act(1984) 등 	

III. 규제 기구

-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03년에 출범한 기구이며,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소관의 “비영리 특수법인 성격의 공적규제 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방송프로그램과 주문형프로그램의 내용 규제를 담당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위한 규제는 다양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당국이 직접 담당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제한 규제는 관련 행정부와 공익단체들이 협력적으로 대응

□ OFCOM의 내용규제 관련 조직 구성 및 역할

이사회 (Board)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COM 설치법(2002)에 근거하여 3인 ~ 12인의 범위 내에서 의회소관위원장이 결정한 규모로 이사회 구성 - 의회소관위원장 선임 이사 : 이사장(비상임), 상임이사(CEO 및 직원이사), 기타 비상임이사 - 스코틀랜드 장관 선임 이사 1인 - 웨일즈 장관 선임 이사 1인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규제 관련 업무) 방송 규정 및 ODPS 규칙의 제정, 내용규제위원회 구성 등 • (기타 주요 업무)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규제 전략 수립 등
집행기관 (Executives)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부문별 국장, 경제전문가 등 ※ CEO :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들이 장관의 동의를 받아 선임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위반 프로그램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조사, 위반 프로그램의 제재 결정 및 집행 등
콘텐츠 소위원회 (Content Board)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4개 개별국가를 대변하는 사람, 이사, 또는 직원(과반수 미만)을 위원으로 OFCOM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로 OFCOM 내부에 구성 • 소위 위원장은 OFCOM의 이사장을 제외한 비상임이사들 가운데 선임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내용의 유해성, 폭력성, 불편부당성, 공정성, 정확성 등에 대한 기준 논의 및 내용규제 관련 지원 업무 수행

IV. 규제 방법 및 절차⁹⁾

□ 개요

- **방송프로그램 및 주문형프로그램의 내용규제**는 기본적으로 OFCOM이 인 권법, 유럽인권협약 등의 관련 조항을 고려하고, 방송법과 커뮤니케이션 법 및 BBC칙허장 등을 근거로 제정한 “방송규정”과 “주문형프로그램 규 칙” 등을 관련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동시에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 접수, 조사, 제재 등의 절 차로 진행
- ➔ OFCOM은 특정 프로그램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당 사업자 에게 우선적으로 제기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고(Broadcasters First or BBC First Principle), 중대한 사안이나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만 OFCOM 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운용

□ BBC 방송 내용 관련 민원 처리 절차(기타 방송의 경우도 유사)

- BBC 방송 내용 관련 민원 처리 과정 : 방송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BBC 내부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2단계로 구분하여 처리

구분		BBC 민원 처리 체계	
		민원 처리 요구 절차	BBC 대응 체계
1단계	Stage 1a	• 방송 후 30일 이내 민원 제기	➔ 10일 이내 결과 처리(프로그램 관 련 부서)
	Stage 1b	• 1a단계 처리 결과 불만족 ➔ 민원 재처리 요구	➔ BBC 시청자 민원서비스 부서 (BBC Audience Services) 접수 ↳ 20일 ~ 35일 이내 결과 처리
2단계 (Stage 2)		• 1단계 처리 결과 불만족 ➔ 최종 처리 요구	➔ BBC 민원전담본부(Executive Complaints Unit) 접수 ↳ 20일 ~ 35일 이내 최종 결과 처리(BBC Final Response)
최종 처리 결과 대응		• 최종 처리 결과 불만족(20일 이내) ➔ OFCOM 민원 신청 가능	

9) 방송프로그램 및 주문형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만 포함

- 관련 방송사에서의 처리 결과가 미흡한 민원이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OFCOM에 직접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OFCOM이 내부 검토 및 조사와 콘텐츠 소위원회(Content Board)의 자문 등을 거쳐,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로 진행

□ OFCOM의 민원 처리 및 제재 절차

- BBC(상업방송사 포함)의 최종적인 민원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은 20일 이내에 OFCOM에 민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민원 사항은 4단계의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제재 조치 가능(일반 상업방송의 민원 처리 과정도 이와 유사)

구분	OFCOM 민원 처리 체계	
	OFCOM 대응 절차 및 내용	BBC 관련 사항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신청 사안의 중대성 등 검토 ↳ 15일 이내 추가 조사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영상 자료 등 준비 요구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조사 진행 결정 ↳ 50일 이내 종결처리 목표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이내 BBC 의견 제출 요구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위반 가능성 및 제재 필요성 인정 ↳ 심의초안(Preliminary view) 작성 ↳ 콘텐츠 소위원회 자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BC 심의초안 송부 ↳ 10일 이내 서면 의견 제출 가능 ↳ 상황에 따라 서면 의견에 대한 구두 설명 가능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결과 처리 → OFCOM의 '최고선임 집행이사'가 BBC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한 안건을 콘텐츠 소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공표 ↳ 제재 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면허취소 등 	